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·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, 관계기관으로부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허용(안 제2조 및 제3조)

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함

나. 관계 기관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(안 제142조의2)

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

2. 농업·임업 및 어업(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농업, 임
업 및 어업을 말한다)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
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(다만, 고용보험 가입
이후 사업 규모의 변동으로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의
경우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한다.)

제142조의2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업경영
체 등록·말소 등 농어업경영정보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 범위)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농업·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.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2조(적용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2.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적용 제외 근로자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.	제3조(적용 제외 근로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. 농업·임업 및 어업(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농업,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)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

	<u>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(다만, 고 용보험 가입 이후 사업 규모 의 변동으로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 는 법의 전부를 적용한다.)</u>
제142조의2(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)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.	제142조의2(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 의 자료 또는 정보 가. ~ 라. (생략)	4. ----- ----- -----
<u><신설></u>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「 <u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 른 <u>농어업경영체 등록·말 소 등 농어업경영정보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
연락처	(044) 202 - 7352